

#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3년 월 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□ 제안이유

-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(2002. 12. 26, 법률 제6831호)됨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도록 함.
- 「재정신청」 관련 수수료를 정함
  1.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: 20,000원
  2.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1.의 수수료에 5배 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
  3.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

## □ 의안전문 : 따로 볼입

## □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볼입

##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환경분쟁조정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원회 운영 등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.  
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.  
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**제3조(수수료)** ① 위원회에 알선·조정·재정 등외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  
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  
 ③ 알선·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전의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**①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②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류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## [별 표]

## 수 수 료

신청별	조정가액별 수수료
일선신청	10,000원
조정신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: 10,000원</li> <li>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1.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</li> <li>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</li> </ol>
재정신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: 20,000원</li> <li>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1.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</li> <li>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</li> </ol>
참가신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</li> <li>재정절차참가신청 :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</li> </ol>
증거보전신청	5,000원
<p>※ 참고 :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<u>500만원</u>으로 하되,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</p>	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제15조(규칙 제정) ①(생략)

②지방조정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제63조(조정비용등) ①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.

②위원회에 대하여 조정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(지방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시·도의 조례)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